

2. 보상결정서

○ 특수임무수행자

- 성명: 박의호, 생년월일: 1952. 10. 30, 당시 주소:

○ 신청인

- 성명: 박의호, 생년월일: 1952. 10. 30, 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 *번길 *-**, ***호

- 결정일: 2020월 6월 22일

3.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(02-3476-8005)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●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-4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함)의 자격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,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·보완하고자 함. 아울러, 그간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·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기관의 필수 인력요건인 전문가, 내부전문가 및 전담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, 별표 1)

나. 교육기관의 지정공고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6조, 제7조, 별표 1 제2호나목)

다.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정·운영상 보완 사항 개정(안 제5조제1항제1호 등)

라. 불명확한 문구 정비 및 표현 구체화 등 기타사항 반영 (안 제1조, 제2조 등)

3. 의견제출

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 : 교육훈련혁신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필요사항

라. 보내실 곳 :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

○ 주소 : (28164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

○ 전화 : 043-830-4431, 팩스 : 043-830-4499

○ 전자우편 : kyungheelee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(전화 : 043-830-4431, 팩스 : 043-830-4499, 전자우편 : kyungheelee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-77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부산전파관리소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 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이*빈	42-2017-20-0000098	300하민호	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	무선국 정기검사불응 (3차위반)	무선국 허가취소
강*산	42-2002-20-0000003	301대운호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팽이바다길		
강원해운(주)	42-2010-20-0000021	336강원호	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		
장*덕	42-2018-20-0000019	316선경호	경상남도 사천시 가마등1길		
김*석	42-2017-20-0001175	325금강호	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번길		
국*미	42-2017-20-0001147	300홍진호	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청문일자: 2020. 11. 19.(목) 10:00

4. 청문장소: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-17)

5. 참고사항

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: ☎051-440-1005
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: ☎055-763-4737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 051-974-51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